

중소기업중앙회 일반현황

2022. 1

KBIZ 중소기업중앙회

I 목 적

- 중소기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며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동정신에 의거하여 조직적인 단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그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1962.5.14.일 설립)

<근거 법령>

- 「헌법」 제123조 제3항(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제5항(자조조직 육성)
-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6525호, 2019.8.10.일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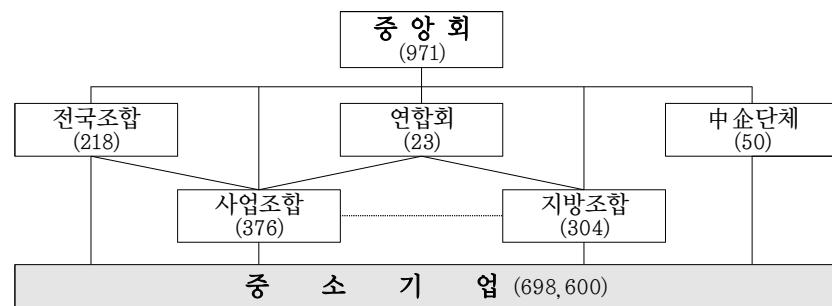
II 성 격

- 헌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 * 근거 : 「헌법」 제123조 제5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한 비영리 특별법인
 - *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 제1항 1호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가 회원인 중소기업 대변기관
 - * 참고 : 우리나라 경제 5단체 → 中企중앙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 자체사업 및 정부지원을 통한 위탁사업 수행
 - * 위탁사업 : 스마트공장구축, 해외시장개척, 외국인력지원, 공공구매, 자체 보조사업 등

III 주요업무 및 기능

-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경영애로 대정부 건의
- 중소기업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및 통계 생산
- 중소기업 조직화 유도,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 대·중소기업 협력 및 하도급 분쟁조정, 중소기업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
- 중소기업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 중소기업 지원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보증·손해공제 등

IV 회원구성



※ 협동조합포털('22.1.4.) 기준 / 중소기업 수는 '21.3분기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구분 >

- (연합회)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동일업종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구성된 협동조직
- (전국/지방조합) 전국 또는 행정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동조직
- (사업조합)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를 통하여 공동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사업의 명칭 부여

V 역 역

Year	Milestone
1962	중소기업의 뿌리를 내리다
1980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다
200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베품목이 되다
2010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확장에 나서다
2019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다.

1961.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공포
1962.0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
1966.12 중소기업기본법 제정
1984.06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출범
1987.03 중소기업회관(어의도) 준공
1997.04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개원
2003.04 대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개장
2006.04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 변경
2007.09 노란우산공제 출범
2010.12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준공
2012.01 풀앤팟 개국
2016.01 베트남 사무소 개소
2019.04 협동조합 중심 조직개편
2019.09 KBIZ중소기업연구소 설립
2019.12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획득

VI 기구 및 인원

- 기구 : 1단 7본부 38실(부국·연구소), 16팀(센터), 2해외사무소 13지역본부



- 인원 : 365명

구 분	임 원	1 급	2 급	3 급	4급	5급이하	계
인원(명)	10	15	34	66	124	116	365

VII 예산 현황

- (회계구분) 일반회계(중소기업 정책 및 협동조합 지원과 조직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와 특정사업 운영을 위한 9개 특별회계로 구성
- (예산규모) 2022년 예산규모는 일반부문 628억원, 위탁부문 923억원 및 공제부문 6조 667억원 등 총 6조 2,218억원

< 2022년 회계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 감 (B-A)	(%)	비 고
일반 (4)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32,033 (16,541)	34,353 (17,269)	2,320 (728)	7.2 (4.4) ○ 중소기업 정책 및 협동조합 지원 사업과 조직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
	교육연수	9,729	9,493	△236	△2.4 ○ 교육연수사업 운영
	조합기능활성화	7,714	7,523	△191	△2.5 ○ 원부자재 공동구매, 조합 네트워킹 지원 등
	DMC타워	10,843	11,465	622	5.7 ○ 중소기업 DMC타워 운영
소 계		60,319	62,834	2,515	4.2
위탁 (3)	위탁사업	82,419	77,970	△4,449	△5.4 ○ 수출건소사업, 스마트공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위탁사업
	대구전시판매	799	803	4	0.5 ○ 대구시 위탁
	인력지원	13,529	13,558	29	0.2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대행 및 취업교육
	소 계	96,747	92,331	△4,416	△4.6
공제 (3)	공제사업기금	627,853	660,451	32,598	5.2
	소기업·소상공인	4,750,365	5,401,330	650,965	13.7 ○ 노란우산 운영
	보증공제	4,829	4,876	47	1.0 ○ 보증·손해·PL공제 운영
	소 계	5,383,047	6,066,657	683,610	12.7
전체	5,540,113	6,221,822	681,709	12.3	

VIII 비전과 목표

- 가치체계

미션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우리는 중소기업에 더 나은 환경조성, 공동사업 활성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비전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No.1 경제단체

중소기업 현장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대안 제시와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힘 있는 경제단체가 되겠습니다.

전략 목표(2024)

정책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No.1 중소기업 종합 공제	조직문화와 체질개선
중企 정책 이니셔티브 강화	중소기업 조직화 제고	최고의 제도 경쟁력 확보	전문가 그룹 위상 확보
빅데이터 기반 정책사업 추진	공동사업 확대	고객신뢰 제고	재정건전성 제고
분야별 정책DB 완성	신산업(유형) 회원 확대	공제 건전성 확보	업무방식, 균무문화 혁신

핵심가치

소통	전문성	책임감	혁신	열정
데이터 기반 수평적 소통 열린 네트워크	자기분야 최고 직무역량 개발	방향성 인식 스스로 찾아 맡은일 끝까지	나부터 실천 소소한 변화	고객과 공감 내 일처럼 친밀하게

IX 주요 사업

○ 중소기업 사업환경 개선

▶ 중소기업 현안 해결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건의

중소기업 현장의견 조사 및 간담회 개최,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 및 관련기관 등에 건의

▶ 산업·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분야별 공통애로 해소를 위해 업종별·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여 상시 의견수렴 및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 중소기업 조직화·건전성 제고

다양한 유형의 조합설립 촉진, 조합 실태조사 및 휴면조합 정비, 조합의 행정부담 완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의 이행 추진

▶ 공동사업 활성화 제고

공동사업 활성화 제도 강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활성화, 업종별 공동 R&D 지원사업 및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통한 협업능력 배양

▶ 주무관청 권한위탁 수행 업무

협동조합 설립 의견, 정관변경 의견, 규약 제·개정 승인, 휴면조합 지정 실태조사, 결산 및 제·보고사항 수리(총회, 임원, 규정, 조합원 변동),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업무와 회계검사 등

○ 공제사업 운영

▶ 공제사업기금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가입자 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자금 대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운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PL단체보험 운영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제공

▶ 파란우산손해공제 운영

중소기업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 주는 다양한 공제(보험) 상품 및 보상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보증공제사업 운영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증권 발급 지원

○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중앙회가 정부, 대기업과 합작하여 '18년부터 5년간 2,500개 구축을 목표로 개별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마케팅 역량과 수출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 주관단체(조합·단체, 민간 전문기업)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파견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사업,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인식개선 사업,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운영 등

▶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 등 구매행위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 단체표준 인증사업

민간에서 제정하는 표준으로 개별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정 등 지원

▶ 중소기업 통계조사 및 정보 제공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비제조업) 실시 및 각종 중소기업 정책, 지원사업 등 정보 제공 및 홍보, '중소기업뉴스' 신문 발간

▶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확산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 및 협업촉진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및 중소기업 CEO역량 강화 교육, 홈쇼핑 입점 지원 등

※ **최근 2년 주요 추진성과는 별첨 참고**

【 참 고 1 】

중앙회 회계구분 관련 법령 등

◦ 공제기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① 중앙회는 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보증공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인력지원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제10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②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DMC타워 ☞ 상암동 DMC타워 사업용지 매매계약(서울시)

◦ 전시판매 ☞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위탁운영 협약(대구시)

◦ 조합활성화 ☞ 협동조합기능활성화자금 운영규정(중앙회)

【 참 고 2 】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역사적 배경

1946. 해방이후 정치·경제적 혼란 극심한 상황에서 산업적 기반이 약했던 남한의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서기 위해 경제계 대표단체 설립에 뜻을 모아 민규식, 유일한 등 서울의 지도적 기업가들이 미군정청 상무장인 오정수의 후원으로 '조선상공회의소' 창립

1956. 상공회의소 의원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인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 시급함을 자각하여 중소기업분과위원회 설치하여 대정부 견의문 제출 및 강습회, 간담회, 조사, 홍보 등 많은 활동전개

1960. 중소공업계만의 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중소공업중앙단체연합회' 창립 후 상공부장관 인가로 사단법인으로 변경

1961. 정부, 중소기업들의 요구와 애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중소기업단체 필요성 공감,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판단하여 서둘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 기존 업종별 단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기대, 48개 업종별 단체 중 39개 단체가 발전적으로 협회를 해산하고 특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으로 전환

1962. 19개 협동조합이 법률에서 정한 중앙회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중소공업중앙단체연합회 회의실에서 설립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5.14일**에 36개 협동조합이 참가한 중앙회 창립총회 개최하고, 기존 중소공업중앙단체연합회 해체

1973. 당초 중소기업의 범주를 광공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에 국한하여 협동조합 설립 토록 제한하였으나, 유통부문을 담당하는 상업, 운송업, 서비스업의 매출규모, 종업원수 등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이 적지 않음을 인식하여 1973년 1월에 협동조합법 개정시 포함

【 참 고 3 】

中企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비교

구 분		중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공 통 점	책임범위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	
	의결권 선거권	출자지분 관계없이 1인 1표	
	설립방법	인가주의	협동조합 : 신고주의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주의
	법 인격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	협동조합 :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기업조직
	종 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요건	법정 최소 발기인수 법정 최저 출자금 *중앙회 제외	법정 최소 발기인수
	가입대상	중소기업자	개인, 법인 등 자유
차 이 점	조합원 출자한도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전국·지방 20%, 사업 30%, 연합회 40% **중앙회 제외	종류별 출자한도 상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30%,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0%
	수행사업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예시적 성격 **금융 및 보험업 영위불가 명시조항은 없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사업 명시 **금융 및 보험업 영위불가 ***사회적협동조합 : 공익사업 40% 이상 필수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공동사업
	잉여금의 배당	조합원 출자금과 조합사업 이용분량 비례 *중앙회 제외	조합 사업이용실적 및 출자지분비례 *사업이용실적 : 배당액의 50%이상 **납입출자액 : 납입출자금의 10%초과 불가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금지
	주무관청 및 감독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업무, 회계 등 보고, 감사)	기획재정부(자율성 부여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필요시 업무상황, 정부, 서류 등 감사)